

# 인증비 안내

## 1. 국내전시회 인증심사비

- 1) 인증신청 전시회의 정보에 대한 평가 및 검증을 위한 비용은 전시장 임차 면적에 따라 부과된다. (단, 합동전시회의 경우 구성전시회(합동전시회를 구성하는 개별 전시회)가 2개 초과일 때는 추가 1개 전시회당 100만원 추가 청구된다.)
- 2)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심사비는 할인 적용된다.
  - ① 동일한 신청기관에서 3개 이상의 전시회에 대해 인증을 신청할 시 3번째 신청한 전시회부터 아래의 표와 같이 할인 적용된다. (중복 적용 가능)
  - ② 동일한 전시회가 연속 3회 이상 인증 신청시 아래의 표와 같이 할인 적용되며 이는 격년 개최되는 전시회에도 동일 적용된다. (중복 적용 가능)
  - ③ 인증을 최초 신청하는 전시회의 경우 50만원 할인이 적용된다. (중복 적용 불가)

<면적 및 신청전시회 수에 따른 인증심사비>

(단위 : m<sup>2</sup>, 천원, 부가세 별도)

총 전시면적	10,000 미만	10,000~ 20,000 미만	20,000~ 30,000 미만	30,000~ 50,000 미만	50,000 이상
인 증 비	3,600	4,000	4,400	4,800	5,200
3회째 신청시	3,240	3,600	3,960	4,320	4,680
신청전시회 2개 초과시	2,880	3,200	3,520	3,840	4,160

\* 각 단계별 할인율은 10%임

## 2. 해외전시회 인증심사비

- ①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의 경우 국내전시회 인증심사비를 기준으로 아래의 표에 따라 정한다.

<해외전시회 인증심사비>

권역구분	아시아, 오세아니아권	아시아, 오세아니아권 이외 지역
비용구분	1.5배	2배

### 3. 기타 인증관련 안내사항

- ① 인증심사비는 전시회 개최 전까지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, 전시회 종료 후 2주 이내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,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거부할 수 있다.
- ② 전시회의 신청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서 인증심사비를 대납할 수 있으나 신청기관에서 별도 공문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인증심사비는 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.

**\*참고사항**

상기 인증비 관련 사항은 차년도(2019. 1. 1) 인증신청 건부터 적용. 금년도는 기 안내된 아래의 인증비 적용

<면적 및 신청전시회 수에 따른 인증심사비>

(단위 : m<sup>2</sup>, 천원, 부가세 별도)

총 전시면적	10,000 미만	10,000~ 20,000 미만	20,000~ 30,000 미만	30,000 이상
인 증 비	3,600	4,000	4,400	4,800
3회째 신청시	3,400	3,800	4,200	4,600
신청전시회 2개 초과시	3,000	3,500	4,000	4,500